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의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서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최저거래금액 및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11조)

- (당초) 20억 원 이상 → (변경) 10억 원 이상

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2항)

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1조제1항)

라.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1조~제3조, 제5조~제27조, 제29조, 제31조~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제98조, 안 별표 6)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농수산물」을 “조례는 「농수산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농산물도매시장”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잡곡중”을 “잡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 이”를 ““시장” 이”로 한다.

제5조 중 “한다)제46조”를 “한다) 제46조”로, ““공판장“ 이”를 ““공판장” 이”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한수”를 “상한 수”로 한다.

제7조 중 “지정시”를 “지정 시”로, “시설사용계약”을 “시설 사용계약”으로, “보험가입등”을 “보험 가입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개시”를 “사업 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 받을”을 “제출받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정유효기간”을 “지정 유효기간”으로, “받고자할”을 “받고자 할”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유효기간”을 “지정 유효기간”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담당임원이 2인 이상”을 “담당 임원이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원중 금고이상”을 “임원 중 금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원중”을 “임원 중”으로, “피성년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중”을 “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임원”을 “해당 임원”으로, “되었을때”를 “되었을 때”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소규모”를 “최소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20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탁출하자”를 “위탁 출하자”로,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설하는등”을 “개설하는 등”으로, “20이상”을 “2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였을때”를 “아니하였을 때”로, “끝날때”를 “끝날 때”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15이상”을 “15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다음달”을 “매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보기준”을 “확보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보기한”을 “확보 기한”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장부비치)”를 “(장부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한다”를 “준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내역”을 “지출 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력결과”를 “출력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래물량”을 “거래 물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업무집행”을 “업무 집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매시장법인이”를 “도매시장법인은”으로, “의거 보고”를 “의거 시장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상황”을 “추진 상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휴업일이외”를 “휴업일 이외”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경매순서”를 “경매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품수수행위”를 “금품 수수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매후”를 “경매 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도매시장내”를 “도매시장 내”로, “확보하여야하는”을

“확보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연간거래규모”를 “연간 거래규모”로,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예상거래액”을 “예상 거래액”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시설사용 면적결정)”을 “(시설 사용면적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사용면적”을 “시설 사용면적”으로, “시설여건”을 “시설 여건”으로, “평가결과등”을 “평가 결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적조정”을 “면적 조정”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한수”를 “상한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등”을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으로, “상한수”를 “상한 수”로 한다.

제24조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보증금등”을 “보증금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잔고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을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 받을”을 “제출받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신

청서를”을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유효기간”을 “허가 유효기간”으로,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3년이상 10년 범위내”를 “3년 이상 10년 범위 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최저거래 금액”을 “최저거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29조제1항 중 “관리의무”를 “관리 의무”로, “정리이외”를 “정리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동사항이 있을때”를 “변동 사항이 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시설사용면적 결정)”을 “(시설 사용면적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시설사용면적 배정등”을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사용 면적 배정등”을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표자외”를 “대표자 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신병치료”를 “신병 치료”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거래형성”을 “거래 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보 할”을 “통보할”로 한다.

제38조 중 “생산자단체등”을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을 “단서 규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허가신청서”를 “거래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결과”를 “검토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53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를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외에 기타”를 “규정 외에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분기만료일”을 “분기 만료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미수금내역등”을 “미수금 내역 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참가인이외”를 “매매참가인 이외”로, “경매참가”를 “경매 참가”로,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로,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정지중”을 “업무정지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참가”를 “거래 참가”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격형성”을 “가격 형성”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실시등”을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동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품질인증품”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매매참가인외”를 각각 “매매참가인 외”로 하고, 같은 항 중 “판매종료 3일 이내”를 “판매 종료 3일 이내”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락후”를 “경락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때”를 “이 때”로, “어깨높이이상”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출하자등”을 “출하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머리높이이상”을 “머리 높이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격미만”을 “가격 미만”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매시장 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을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도매시장내 거래 여건 등”으로, “차상경매등”을 “차상경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반입물품”을 “반입 물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견본제시”를 “견본 제시”로, “포장해제”를 “포장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락단가”를 “경락 단가”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시장상황, 계절변동등”을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매참여”를 “경매 참여”로 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시행규칙 제32조”를 “시행규칙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CD등)”을 “CD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매이외”를 “경매 이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예치자금”을 “예치 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하는등”을 “제한하는 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출하대금 결제용”을 “출하대금결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매대금”을 “매매 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을시”를 “있을 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일정금액이상”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험증권”을 “보험 증권”으로 하고, “가입증서등”을 “가입증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가입”을 “보험 가입”으로, “지정허가시”를 “지정 허가 시”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확대사용”을 “확대 사용”으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이 때”를 “이때”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그 날”을 “그날”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예상액)”을 “수입 예상액)”으로, “별도계정”을 “별도 계정”으로, “손실보전이외”를 “손실보전 이외”로 한다.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가격등”을 “가격 등”으로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분방법”을 “배분 방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면적비율”을 “면적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부과대상”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납부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68조 중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한다.

제69조 본문 중 “중량에의한다”를 “중량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량단위”를 “중량 단위”로, “거래관습”을 “거래 관습”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래제도”를 “거래 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역비등 제반 비용결정”을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거래농산물”을 “거래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을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으로, “거래분쟁”을 “거래 분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를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유해물질”을 “유해 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출하자”를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도매시장”을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한다.

제72조 본문 중 “도매시장안”을 “도매시장 안”으로, “거래관계자”를 “거래 관계자”로,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이외”를 “편익 업소 및 부대 업소 이외”로 한다.

제73조 중 “부속업자”를 “부속 업자”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부속업자”를 “부속 업자”로, “기타사용 조건등”을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시설사용”을 “시설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납입기관”을 “납입 기관”으로 하고, “납입장소등”을 “납입 장소 등”으로, “납기마감 7일전”을 “납기 마감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기경과 30일이내”를 “납기 경과 30일 이내”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를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독촉기한내”를 “독촉기한 내”로 한다.

제77조 중 “철거등”을 “철거 등”으로, “변경행위”를 “변경 행위”로,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하며,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원상회복”을 “원상 회복”으로 한다.

제78조 중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지정”을 “사용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질서”를 “시장 질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정변경”을 “사정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멸실”을 “멸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지시처분”을 “지시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등”을 “철거 등”으로 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취소”를 “지정 취소”로, “기타”를 “그 밖”으로, “도매업무”를 “도매 업무”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내”를 “도매시장 내”로, “촉진등”을 “촉진 등”으로 하며, “하역장비”를 “하역 장비”로, “운용등”을 “운용 등”으로, “하역장비”를 “하역 장비”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평가내용”을 “평가 내용”으로, “평가기준등”을 “평가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

체평가”를 “자체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시설사용면적”을 “시설 사용면적”으로, “점포수”를 “점포 수”로, “차등화등”을 “차등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평가결과를 공고등을 통해 출하자등”을 “평가 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장비·용기등 매매거래”를 “장비·용기 등 매매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구등”을 “용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역장비”를 “하역 장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운반등”을 “운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운반등”을 “운반 등”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환경유지”를 “환경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사용자”를 “시설 사용자”로, “출입금지등”을 “출입 금지 등”으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물품확보”를 “물품 확보”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업무집행”을 “업무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시설사용자”를 “그 밖의 시설 사용자”로, “개선등”을 “개선 등”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법령, 동법시행령”을 “법, 영”으로, “6월이내”를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이 기준중”을 “대해서는 이

기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93조 중 “시행령 제36조의4”를 “영 제36조의5”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를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으로, “각호”를 “각 호”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도매업허가”를 “중도매업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중 제6조 내지 제9조”를 “조례 중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지정취소등”을 “지정취소 등”으로,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중 “조합등”을 “조합 등”으로, “부속영업자”를 “부속 영업자”로, “검사 할”을 “검사할”로 한다.

제98조 중 “세부시행”을 “세부 시행”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및 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중도매업의 허가를 득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유효기간 등)에 따른다.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별표 6]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 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선산출장소장, 농식품산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매시장법인대표(또는 공

판장장)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교수, 시의원, 유통관련전문가,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 소집은 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u>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는 「농수산물 ----- ----- ----- ----- <u>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u>----- -----.</p>
<p>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u>농산물도매시장</u>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u>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u>(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p>
<p>제3조 (거래품목) <u>농산물도매시장</u>(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p> <p>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u>잡곡중</u> 신선한 것.</p> <p>2. <u>기타</u>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u>구미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p>	<p>제3조(거래품목) <u>도매시장</u>----- -----.</p> <p>1. ----- ----- ----- <u>잡곡 중</u> ----- -----.</p> <p>2. <u>그 밖에</u> ----- ----- “<u>시</u> <u>장</u>”이----- -----</p>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

----- 한다) 제46조 -----

----- “공판장”이

-----.

제6조(적정수) -----
----- 상한수-----.

1.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조건) -----
--- 지정시 -----

----- 시설사용계약-----
----- 보험가입등-----
-----.

제8조(지정절차) ① -----

----- 각호-----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개시 -----

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 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생략)

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 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9조(재지정) ①도매시장법인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안 -----

-----.

④ -----

----- 제출 받을 -----.

제9조(재지정) ① -----

----- 지정 유효기간 -----
----- 받고자 할 -----
----- 30일 전 -----

-----.

② -----
----- 지

정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
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하
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요건) ①도매시장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
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
년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

정 유효기간 -----

----- 5년 이상

----- 범위 내-----

-----.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

-----.

1. -----

----- 2년 이상 -----

-----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

2. 임원 중 금고 이상-----

3. 임원 중 -----

----- 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임원 중 -----

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삭 제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때는 그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청과부류 : 20억원이상

제12조(보증금 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③ ----- 해당 임원-----

----- 되었을 때-----
----- 지체 없-----
-----.

제11조(자본금 규모) -----
----- 최소 규모-----
----- . ----- 대해서-----
-----.

1. ----- 10억원 이상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
----- 위탁 출하자-----
----- 업무 수행-----

----- 30일 이내-----
-----.

② -----

----- 개설
하는 등-----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생략)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

----- 20 이상 -----

③ -----

----- 기한 내 -----

④ -----

----- 아니하였을 때 -----

----- 끝날 때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증금 반환) -----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매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

-- 60일 이내-----
----- . -----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 -----

당해 연도 -----

-- 15 이상-----.

② ----- 매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 달 --

③ -----
확보 기준-----

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장부비치) ①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 5. (생략)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생략)

②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

④ -----

----- 확
보 기한-----
-----.

제15조(장부 준비) ① -----

준비한다.

1. ----- 지출 내역-----

2. ~ 5. (현행과 같음)

② -----
----- 출력 결과-----
-----.

③ -----
----- 거래 물량-----

-----.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업무 집행 ---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
인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영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
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
다.

②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
에게 겸영업무의 추진상황에 대
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휴·폐업 신고) ①도매시
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
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
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

1. ~ 3. (생략)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

제1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
인은 -----

----- 의거 시장에게 보고-----
--.

② -----
----- 추진 상황-----
-----.

제18조(휴·폐업 신고) ① -----

휴업일 이외-----

10일 전-----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매사의 행위금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경매 순서 -----
--

5. -----
금품 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또는 낙찰자를 조작하는 행위

7. 기타 법령, 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0조 (경매사의 수)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1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6. 경매 후 -----

7. 그 밖의 ----- 이 조례 -----

제20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 확보하여
야 하는 -----
----. ----- 연간 거래규모-----

----- 당해 연도 --
----- 예상 거래액
-----.

제2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① -
----- 시설 사용면적-----
----- 시설 여건-----
----- 평가 결과 등-----

-----.

② 면적 조정-----
-----.

제22조(지정취소) 도매시장 개설
자는 도매시장법인-----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 보증금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절차)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 지정 또는 승인-----.

제23조(적정수) ① ----- 상한수-----.

1. (현행과 같음)

② -----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등을 ----- 상한수-----.

제24조(허가조건) ----- 허가시 ----- 보증금 등-----.

제25조(허가절차) ① -----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생략)

② (생략)

③중도매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6조(갱신허가)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

제1항-----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잔고 증명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출받을-----.

제26조(갱신허가) ① -----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

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중도매업 갱
신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허가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3년 이
상 10년 범위내에서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 (최저거래금액) ①중도매
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
음과 같다.

②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등
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라함은 매분기별 총
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제29조(보증금 관리) ①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
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
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

.

② -----

허가 유효기간 -----
평가 결과----- 3년 이
상 10년 범위 내-----

.

제27조(최저거래금액) ① -----
----- 최저거래금액-----

.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산정 및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
분기준을 적용한다.

제29조(보증금 관리) ① -----

----- 관리 의무-----

----- 정리 이외-----

.

② -----

-----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고하여야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
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시
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
정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
해 시설사용 면적 배정등에 있
어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
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
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
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한다.(단서 신설 2008.06.10.)

1.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
원을 할 경우 그 기간
2. 3. (생략)

-----.

③ -----

----- 아니 된다.

제31조(시설 사용면적 결정) ① -
----- 평가 결과-----
----- 시설 사용면적 배
정 등-----.

② -----

--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
-----.

제32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
----- 대표자 외-----

-----.

1. 신병 치료-----

2. 3. (현행과 같음)

제33조 (신고)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34조 (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취소)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

제33조(신고)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 금지) ① -----

거래 형성-----

② (현행과 같음)

③ -----

----- 마
련-----.

제37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 통

보 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제38조(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
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법 제31
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
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
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산물의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 략)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
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
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
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보 할 -----

-----.

제38조(출하자 신고) -----

-- 생산자단체 등-----

-----.

제42조(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
----- 단서 규정-----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

----- 거래허
가 신청서-----
-----.

③ -----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제 제11조 내지 제15조, 제53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제4항의 규정외에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 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미수금의 관리) ① (생략)

②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

④ -----

-----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규정 외에 그 밖의 -----
-----.

제42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기 만료일-----

-----.

제44조(미수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등을 매 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 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중 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 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생략)

②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

----- 미수금 내역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

-- 매매참가인 이외-----경매 참가-----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아니 된다.

1. ----- 담보 이 상으로 거래 한도-----
--
2. 업무정지 중--
3. (현행과 같음)

② ----- 거래 참가-----

----- 아니 된다.

③ -----

---- 가격 형성-----
-- 아니 된다.

④ -----

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 출하지역 · 품목 · 수량 · 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 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 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

----- 매매참가인 외-----

----- 판매 종료 3일 이내-----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 각 호-----.

1. ----- 경락 후-----.

2. ----- 이 때 ----- 어깨 높이 이상 ----- 출

하자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 출하지역 · 품목 · 품종 · 수량 · 품위등급등을 표시하거나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 입찰금액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자가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

하자 등 -----
-----.

3. -----

----- 머리 높이
이상 -----.

4. -----

----- 그 밖에 -----

-----.

② -----

----- 가격 미
만----- 아니 된다.

③ ----- 도매

시장 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 · 품목별 · 등급별 · 갯수별로 선별 진열)
2. · 3. (생략)
4. 경매실시
 - 가. · 나. (생략)
 - 다. 건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 바. (생략)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5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생략)
②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등

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9조(경매절차) -----
----- . ---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
----- 차상경매 등 -----
-----.

1. 반입 물품-----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건본 제시-----
----- 포장 해제-----

- 라. ~ 바. (현행과 같음)
5. ----- 경락 단가-----

제5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

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 ①중도매인은 경락 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이 내에는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반출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매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생략)

③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등) 하여야 한다.

제51조(경락물품의 반출) ① -----

----- 3일 이
내-----

----- 10일 이내-----
-----.

② -----

----- 경매 참여-----
-----.

제52조(판매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행규칙 제37조-----

-----.

④ -----

----- CD 등) -----.

⑤도매시장법인은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생략)

②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은 제5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

⑤ ----- 경매 이외-----

-----.

제5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치 자금 -----
-----.

③-----

-- 제한하는 등 -----
-----.

제54조(대금결제) ① -----

-----.

-- 출하대금결제용 -----

-----.

② ----- 매매 대금-----
-----.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
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
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
장은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
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
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
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
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
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

② ----- 보험 가
입-----
-- 지정 허가 시 -----.

제57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
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확대 사용

-----.

제5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

----- 이 때-----

-----.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예상액)의 1000분의 5 이상을 별도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전금은 출하자 손실보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신 설>

-----.

제60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

----- 그날-----

----- 10일 이내

-----.

② -----

수입 예상액)-----
-- 별도 계정-----
----- 손실보
전 이외-----.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유통정보 공개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
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
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
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
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
----- 가격 등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2조(시장사용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배분 방법--- ---- 각 호---
-----.

1. -----

----- 면적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등
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2조(시장사용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
용료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
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시장법
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
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
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
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9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의한다. 다
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
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
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
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
비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4. (생 략)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
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
한 사항
6. (생 략)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69조(거래단위) -----
----- 중량에 의한다. ---
----- 중량 단위-----

--- 거래 관습-----

-----.

제70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1. ----- 거래 제도 -----

2. ----- 하역
비 등 제반 비용 결정-----

3. 4. (현행과 같음)
5. ----- 거래 농산
물-----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 ⑦ (생략)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제70조의2(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

----- 거래 분
쟁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 . -----
----- 실국장-----
-----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는 업무 담당 팀장이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

----- 유해 물질-----

② -----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
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2조 (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
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
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
소 및 부대업소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단, 시장이 시설물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
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 출하자(다른 도매
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
함한다)---- 해당 농산물과 같
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검사 결과-----

-----.

제72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
장 안-----
---- 거래 관계자-----
----- 편익 업
소 및 부대 업소 이외-----
-----.

제73조(부속영업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의 용도지정등)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사용 조건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제76조 (관리부과금의 징수) ①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관, 납입금액, 납입장소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

부속업자

제74조(시설의 용도지정등) ① --

부속업자

그 밖의 사용 조건 등

제7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

시설 사용

② ---- 제63조

납입 기관 ----- 납입 장소 등 ----- 납기 마감 7

일 전

③

납기 경과 30일 이내

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 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7조 (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 (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 10일 이내-----
--.

④ -----
----- 시설 사용료 -----
-----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 -----.

⑤ ----- 독촉기한 내-----
-----.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

----- 철거 등 ----- 변경 행위 -----

----- 시설 사용자-----

----- 시설 사용자----- 원상 회복-----
-----.

제78조(시설반환) 시설 사용자-----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9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략)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략)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생략)

제82조(시설의 관리책임) ①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 기간 내-----

제79조(시설사용 관리) -----

----- 사용 지정-----

1. (현행과 같음)
2. 시장 질서-----

3. (현행과 같음)
4. -----
사정 변경-----

5. -----
----- 멸실, -----
6. ----- 그 밖의 -----

7. (현행과 같음)

제82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

----- 지시 처분-----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트 반입 후 재분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

-----.

② -----

-- 철거 등 -----
-----.

제84조(도매업무의 대행) -----
----- 지정 취소 -----
----- 그 밖 -----

----- 도매 업무 -----
-----.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 대해서 -----

-----.

② --- 도매시장 내-----

계획 촉진등을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생략)

②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등을 정하
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
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해 시
설사용면적의 위치, 점포수 조
정, 사용료 차등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생략)

⑥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등을
통해 출하자등 도매시장의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7조(장비의 확보) ①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등 매

----- 촉진 등-----

----- 하역 장비-----

운용 등 -----

----- 하역 장비-----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연도-----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등---

-----.

③ ----- 자

체 평가-----.

④ --- 평가 결과-----

----- 시

설 사용면적----- 점포 수 --

----- 차등화 등-----

-----.

⑤ (현행과 같음)

⑥ --- 평가 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

-----.

제87조(장비의 확보) ① -----

----- 장비·용기 등 매

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송차량, 지게차, 하역장비
3. ~ 5. (생략)
6. 기타 경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용기

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9조(환경의 유지) ①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

매 거래-----
-----.

② -----
----- 용구 등
-----.

1. (현행과 같음)
2. ----- 하역 장비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8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 시설 사용자
----- 운반 등
-----.

② -----
----- 대해서-----

----- 운반 등-----.

제89조(환경의 유지) ① -----
시설 사용자----- 환경 유지-----.

② -----

----- 시설 사용자-----

하여 출입금지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1조(보고 및 명령)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령,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 출입 금지 등 -----
-----.

제90조(재해시의 물품확보) -----

물품 확보-----
-----.

제91조(보고 및 명령) ① -----

----- 업무 집행 -----
-----.

② -----

----- 그 밖의 시설 사용자-----
----- 개선 등 -----
-----.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

----- 법, 영-----

----- 6월 이내-----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
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
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
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
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
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9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
1항에 의거 시장이 도매시장법
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
에 의한다.

제95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
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

-----.

② -----

----- 대해
서는 이 기준 중 -----
-----.

③ -----
범위 내-----

제93조(과징금 처분) -----

----- 영 제36조의5-----
-----.

제95조(불법행위 고발센터의 설
치) ① -----

-----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
-----.

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

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
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등) 시장은 도
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
무소의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 다만, 중도매업허가 및 취
소,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매매
참가인 신고, 출하장 및 산지 유
통인 등록 또는 취소 등의 사무
는 내부 위임한다. (단서신설 20
02.01.11.)

1. 이 조례중 제6조 내지 제9조
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지
정조건, 지정절차, 재지정, 제1
1조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의
지정취소등 도매시장법인의
관련규정

제97조(검사) 도매시장 운영관리
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조합등 포함)·
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부
속영업자의 도매시장 업무와 관

장 내 -----

-----.

제96조(권한의 위임등) -----

-- 관리·감독----- 각 호

- 농식품산업과장-----

-- . ---- 중도매업 허가-----

1. -- 조례 중 제6조부터 제9조
까지-----

지정취소 등 -----
관련 규정

제97조(검사) -----

-----조합 등-----
-----부
속 영업자-----

련된 장부 및 재산 상태를 검
사 할 수 있다.

제9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
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검
사할 -----.

제98조(시행규칙) ----- 세
부 시행-----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④ ~ ⑥ (생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략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 ~ ⑦ (생략)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 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 기준

가. (생략)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1) ~ 2) (생략)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허가 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 정지 10일

4) ~ 16) (생략)

다. ~ 라. (생략)

소 관 부 서		농식품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신 미 정
	팀 장	최 경 숙
	담 당 자	윤 상 현 (480-4754)